

법인세·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(조정계산) 및 세액신고서

(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)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앞쪽)

①소재지	②전자우편주소
------	---------

③법인명	④대표자성명
------	--------

⑤사업자등록번호	⑥사업연도	⑦전화번호
----------	-------	-------

구분		법인세	농어촌특별세
과세표준 계산	⑧이자소득금액계		
	⑨준비금손금산입액		
	⑩기부금손금산입액		
	⑪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손금산입		
	⑫각사업연도소득금액 (⑧-⑨-⑩-⑪)		
	⑬비과세소득		
	⑭과세표준(⑫-⑬)		
세액의 계산	⑮세율		
	⑯산출세액		
	(미납세액, 미납일수, 세율)		(, , 2.2/10,000)
	⑰납부지연가산세액		
	⑱가감계(⑯+⑰)		
	기납부 세액	⑲중간예납세액	
		⑳원천납부세액	
		㉑()세액	
		㉒계(⑲+⑳+㉑)	
	(세액, 미납일수, 세율)	(, , 2.2/10,000)	
	㉓추가납부세액		
	㉔차감납부할세액 (⑱-㉓+㉔)		
	㉕분납할세액		
	㉖차감납부할세액(㉔-㉕)		

국세환급금 계좌신고	㉗예입처	은행 (본)지점
	㉘예금종류	예금
	㉙계좌번호	

신고인은 「법인세법」 제6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,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.

신고인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세무대리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 방법

- ⑧이자소득금액계란: 해당 사업연도 중에 수입된 「법인세법」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할인액 및 이익과 「소득세법」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이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[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(갑)(별지 제27호서식(갑))상의 ⑲란의 금액]을 더하여 적습니다.
- ⑨준비금손금산입액란: 당기 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 {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7호서식(갑)]상의 ⑪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②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란의 금액 중 적은 금액} 을 적습니다.
- ⑩기부금손금산입액란: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한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 것과 별도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내의 금액 등[기부금조정명세서(별지 제21호서식)상의 ㉔란의 금액]을 적습니다.
- ⑪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란: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해당연도에 손금 산입되는 금액{기부금 조정명세서[별지 제21호서식]상의 ㉔란의 합계금액}을 적습니다.
- ⑭・⑯란 중 농어촌특별세: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(별지 제12호서식)상의 ⑧소계란 중 ②과세표준금액 및 ③세액을 각각 적습니다.
- ⑯세율란: 법인세의 경우 「법인세법」 제55조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2조제1항 중 최고세율을 적고,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을 적습니다.
- ⑰납부지연가산세액란: 법인세의 경우 "가산세액계산서(별지 제56호서식 부표)"의 가산세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㉓추가납부세액란: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5년 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{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(갑)[별지 제27호서식(갑)]상의 ⑲란의 금액} 이 있는 경우에 「법인세법」 제29조제7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.
- ㉕분납할세액란: 「법인세법」 제6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과 「농어촌특별세법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분납할 세액을 적습니다.
-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

(앞쪽)

사 업 연 도	. . . ~ . . .	가 산 세 액 계 산 서 (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)	법 인 명	
			사업자등록번호	

1. 가산세액의 계산

① 구 분		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분				
		② 계산기준	③ 기준 금액	④ 가산세율	⑤ 코드	⑥ 가산세액
과소신고	일반	과소신고납부세액		10/100	3	
	부정	과소신고납부세액		40/100	22	
납부지연		(일수) 미납세액	()	2.2/10,000	4	
기타					63	
합 계					21	

법정납부기한
(. .)

납부일
(. .)

2. 과소신고 납부세액 계산

⑦ 구분		⑧ 과소신고 납부세액	과소신고 과세표준금액				과소신고 납부세액			
			⑨ 계	⑩ 일반	⑪ 부정	⑫ 부정 (국제거래)	⑬ 계	⑭ 일반 (⑧×(⑩/ ⑨))	⑮ 부정 (⑧×(⑪/ ⑨))	⑯ 부정(국 제거래) (⑧×(⑫/ ⑨))
이자소득	과소신고									
	기납부세액 과다 등									

작성 방법

1. 과소신고납부세액가산세

-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을 일반과소(⑩)와 부정과소(⑪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⑫)로 구분하여 ⑨란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⑧란의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곱하여 ⑬란의 납부세액을 일반과소(⑭), 부정과소(⑮), 부정과소(국제거래)(⑯)로 구분하여 적은 후, ④란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⑥ 가산세액란에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가산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.
- 과세표준의 변동과 관계없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(기납부세액 과다공제 등)과 관련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은 ⑦ 구분란의 '기납부세액 과다 등'의 칸에 적습니다.
-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액의 90%,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75%,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50%, 6개월 초과 1년 이내 30%,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20%,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1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합니다.

2. ① 구분란의 납부지연란

미납세액에 가산세율(2.2/10,000를 적용하되, 2019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3/10,000을, 2019년 2월 12일부터 2022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2.5/10,000를 적용한다)과 미납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.

3. ① 구분란의 기타란

「법인세법」 제75조 및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9에 따른 가산세액을 적습니다.

4. ■ 음영으로 표시된 란은 적지 않습니다.